

변경내용

2016.10.12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61234
A	62973
C1	45224
C2	61357

2. 주요 변경 내용 :

- ①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모투자신탁 신설(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및 기존펀드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② 펀드명칭 변경
 - 변경전 :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 적립 [증권투자신탁 제 1 호](#)[주식]
 - 변경후 :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 적립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③ 모투자신탁 추가: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④ 환매수수료 삭제

3. 변경 대상 서류 : 규약,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4. 변경시행일 : **2016.10.18.**

[규약변경대비표]

가. 주요 정정내용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칭변경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u>증권투자 신탁 제 1 호</u> [주식]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u>증권자투 자신탁</u> [주식]
제 2 조 (용어의 정의)	6.<신 설> 7.<신 설> 6. <생 략>	6.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모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 투자기구를 말한다. 7.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이 투자신 탁이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8. <호 순연>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u>증권투자신탁 제 1 호</u> [주식]"이라 한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6. <신 설> ③ <생 략> ④ 이 투자신탁은 법제 233 조의 규정 에 의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집 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다. 1.<신 설> 2.<신 설> ⑤<신 설>	①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u>증권 자투자신 탁</u> [주식]"이라 한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6. <u>모자형</u> ③ <생 략> ④ 이 투자신탁은 법제 233 조의 규정 에 의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집 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다. 1. <u>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 모투자신탁</u> [주식] 2. <u>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u> [<u>주 식</u>] ⑤ <u>집합투자업자는 제 4 항 각 호 이 외의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3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u>
제16조 (투자목적)	<u>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비교지수</u>	이 집합투자기구는 <u>주식에 주로 투자 하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u>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KOSPI200 X 90% + CD 수익률 X 10%)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 (투자대상자산 등)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3 조제 4 항 각 호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p>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3 조제 4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상으로 투자한다. 2. 제 17 조제 2 항각호 방법으로는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19조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p>(운용 및 투자 제한)</p>	<p>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p>	<p>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p>	<p>①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5 호 및 제 10 호의</u>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p> <p>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만한다)</p> <p>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만한다)</p> <p>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u>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5 호 및 제 10 호의</u>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② <u>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u></p>	<p>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2 호의</u>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p> <p>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p> <p>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p> <p>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u>제 18 조 제 1 호 및 제 2 호의</u>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②~④ <삭제></p>

	<p>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 제 6 호 내지 제 9 호, 제 19 조 제 2 호 내지 제 6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③ 제 19 조 제 2 호 본문, 제 3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 17 조 제 1 항제 2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 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 25 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p>	<신설>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p>
<p>제 26 조 (환매업무)</p>	<p>⑦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⑦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제 26 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p>	<신설>	<p>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p>

		<p>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금전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 28 조 (환매연기)</p>	<p>④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p>	<p>④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u>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도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u>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p>
<p>제 35 조 (상환금 등의 지급)</p>	<p>② 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u>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② 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u>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 37 조 (수익자총회)</p>	<p>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p> <p>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p>	<p>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u>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u></p> <p>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u>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u></p>

		<p>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제41조(환매수수료)</p>	<p>① <u>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u></p> <p>② <u>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u></p> <p>1. 30 일미만 : 이익금의 70%</p> <p>2. 30 일이상 90 일미만 : 이익금의 30%</p> <p>③ <u>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u></p>	<p><u>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제 43 조 (신탁계약의 변경)</p>	<p>④ <u>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3 항 및 제 5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④ <u>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u></p>
<p>제 49 조 (공시 및 보고서 등)</p>	<p>② <u>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u></p>	<p>② <u>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u></p>

	<p>⑦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2.<생략></p> <p>⑧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제 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 7항 단서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하여야 한다.</p> <p>⑦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u>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2.<좌동></p> <p>⑧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제 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 보고서(<u>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 7항 단서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부 칙	<신 설>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모자형으로 변경 및 모투자신탁 추가, 펀드명 변경, 환매수수료 삭제)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가. 주요 정정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칭변경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 적립 증권투자신탁 제1호 [주식]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 적립 증권자투자신탁 [주식]
모자형투자신탁으로 변경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신설>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모투자신탁 추가	<신 설>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환매수수료	1. 30 일미만 : 이익금의 70% 2. 30 일이상 90 일미만 : 이익금의 30%	<없음>

나. 기타 변경내용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약정보		
I. 집합투자기구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주식형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인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및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에 90%이상을 투자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입니다.
환매수수료	1. 30 일미만 : 이익금의 70% 2.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없음
II. 집합투자기구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u>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u> * 비교지수 =(KOSPI200 X 90%) + (CD금리 X 10%)	이 집합투자기구는 <u>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u> * 비교지수 =(KOSPI200 X 90%) + (CD금리 X 10%)
2.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주식형 펀드로서, 거시적인 경제전망에 따라 주식 및 채권의 중·장기적인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90%이상을

자산배분을 결정하며, 채권등의 투자에 의한 이자소득 외에 중·장기적인 주식투자를 통하여 추가 자본수익을 추구하며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② 주식 모델 포트폴리오는 업종대표주/우량주/가치주 등으로 구성하며 구성종목에 대한 탄력적인 편입비관리를 통한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③ 배당시존에는 고배당수익률이 가능한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되 주가 상승으로 배당수익률 하락 예상시에는 매도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주가변동폭이 미미할 경우 배당투자를 지속적으로 투자합니다.

④ 채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 이내에서 금리전망에 따라 듀레이션을 고려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주력하며,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및 CD금리선물을 이용하여 자산가격하락 위험에 대처합니다

⑤ 어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 이하로 투자합니다.

* 비교지수 =(KOSPI200 X 90%) + (CD금리 X 10%)

모투자신탁인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및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의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통한 수익을 얻는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 비교지수 =(KOSPI200 X 90%) + (CD금리 X 10%)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모투자신탁명칭: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주식형 펀드로서, 거시적인 경제전망에 따라 주식 및 채권의 중·장기적인 자산배분을 결정하며, 채권등의 투자에 의한 이자소득 외에 중·장기적인 주식투자를 통하여 추가 자본수익을 추구하며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 주식 모델 포트폴리오는 업종대표주/우량주/가치주 등으로 구성하며 구성종목에 대한 탄력적인 편입비관리를 통한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배당시존에는 고배당수익률이 가능한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되 주가 상승으로 배당수익률 하락 예상시에는 매도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주가변동폭이 미미할 경우 배당투자를 지속적으로 투자합니다.

- 채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 이내에서 금리전망에 따라 듀레이션을 고려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주력

		<p>하며,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및 CD금리선물을 이용하여 자산가격하락 위험에 대처합니다</p> <p>* 비교지수 =(KOSPI200 X 90%) + (CD 금리 X 10%)</p> <p>* <u>모투자신탁명칭: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u></p> <p>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우량주식, 가치주식 및 고배당 주식을 중심으로 장기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치의 차별적 반영과 주가의 차별화된 상승을 반영, 업종 대표주에 투자 - 기업가치와 더불어 성장성, 수익성이 업종평균/시장평균 이상인 기업 - 고배당기업 및 현금창출능력이 우량하여 주주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기업 - 지배구조가 우량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기업 <p>BM : (KOSPI200 X 90%) +(CD금리X 10%)</p>
3.운용전문인력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p><u>이 투자신탁은 주식에의 투자에 있어서 신탁재산 60%이상을 우량주식, 가치주식, 고배당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성장형 주식투자신탁입니다.</u>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5.03%이며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p>	<p>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u>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및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u>인 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증권(주식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5.03%이며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p>

	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u>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u> 은 자산의 대부분을 업종별로 우량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식과 고배당 주식을 선별·집중 투자하여 동 주식시장의 상승에 상승하는 투자수익을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u>증권투자신탁[주식]</u> 은 자산의 대부분을 업종별로 우량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식과 고배당 주식을 선별·집중 투자하여 동 주식시장의 상승에 상승하는 투자수익을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신 설>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자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모자형구조	<신설>	1.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90%이상 투자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u>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u> * 비교지수 =(KOSPI200 X 90%) + (CD금리 X 10%)	이 집합투자기구는 <u>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u> * 비교지수 =(KOSPI200 X 90%) + (CD금리 X 10%)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신 설> <신 설>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신 설> <신 설>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	(1) 투자전략 : <신 설>	(1) 투자전략 :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모자형 구조

<p>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신 설></p>	<p>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90%이상을 모투자신탁인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및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의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통한 수익을 얻는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p> <p>- 모투자신탁 명칭 :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주식형 펀드로서, 거시적인 경제전망에 따라 주식 및 채권의 중·장기적인 자산배분을 결정하며, 채권등의 투자에 의한 이자소득 외에 중·장기적인 주식투자를 통하여 추가 자본수익을 추구하며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 주식 모델 포트폴리오는 업종대표주/우량주/가치주 등으로 구성하며 구성종목에 대한 탄력적인 편입비관리를 통한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배당시즌에는 고배당수익률이 가능한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되 주가상승으로 배당수익률 하락 예상시에는 매도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주가변동폭이 미미할 경우 배당투자를 지속적으로 투자합니다. - 채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 이내에서 금리전망에 따라 듀레이션을 고려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주력
------------------------------	---	--

	<p>라. 수익구조</p> <p>- 주된 투자대상 자산인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의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단순한 구조입니다.</p>	<p>공동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합니다.</p> <p>-투자자산간 또는 투자자산내에 분산 투자 및 손절매제도 시행으로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운용팀내 투자의견을 집약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합니다.</p> <p>-기본적으로 주식,채권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과정을 중시하고 유연한 시장 대응으로 수익자의 수익극대화 도모와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기업(신용평가기관 업무협정)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자료등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p> <p>라. 수익구조</p> <p>-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주된 투자대상 자산인 주식의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단순한 구조입니다.</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u>이 투자신탁은 주식에의 투자에 있어서 신탁재산 60%이상을 우량주식, 가치주식, 고배당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성장형 주식투자신탁입니다.</u>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5.03%이며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u>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u>은 자산의 대부분을 업종별로 우량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식과 고배당 주식을 선별·집중 투자하여 동 주식시장의 상승에 상승하는 투자수익을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u>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u>인 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증권(주식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5.03%이며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u>증권자투자신탁 [주식]</u>은 자산의 대부분을 업종별로 우량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식과 고배당 주식을 선별·집중 투자하여 동 주식시장의 상승에 상승하는 투자수익을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p>

<p>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p>	<p><신 설></p>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p>
<p>나. 환매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p>	<p><신 설></p>	<p>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 증권에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11. 나. 환매 (4)환매수수료</p>	<p>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p>	<p><u>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u> <u>집합투자업자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u></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부과되는 수수료</p>	<p>-환매수수료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p>	<p>-환매수수료 없음</p>
<p>제 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p>		
<p>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운용자산규모</p>	<p>-</p>	<p>작성일 기준으로 갱신</p>
<p>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p>	<p>(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p>	<p>(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p>

	(3)수익자총회 결의사항	<p>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p> <p>(3)수익자총회 결의사항 (<u>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u>)</p>
<p>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나. 잔여재산분배</p>	<p>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u></p>
<p>제 5 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업무보고서</p>	<p>(2)자산운용보고서 (3)자산보관·관리보고서</p>	<p>(2)자산운용보고서(<u>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u>) (3)자산보관·관리보고서(<u>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u>)</p>
<p>제 5 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p>	-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가. 주요 정정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칭변경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 적립 <u>증권투자신탁 제 1 호</u> [주식]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 적립 <u>증권자투자신탁</u> [주식]
모자형투자신탁으로 변경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신설>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모투자신탁 추가	<신 설>	<u>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u> [주식]
환매수수료	<u>1. 30 일미만 : 이익금의 70%</u> <u>2. 30 일이상 90 일미만 : 이익금의 30%</u>	<없음>

나. 기타 변경내용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구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주식형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인 <u>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 모투자신탁</u> [주식] 및 <u>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u> [주식]에 <u>90%이상</u> 을 투자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입니다.
환매수수료	<u>1. 30 일미만 : 이익금의 70%</u> <u>2.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u>	없음
II. 집합투자기구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u>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u> * 비교지수 =(KOSPI200 X 90%) + (CD금리 X 10%)	이 집합투자기구는 <u>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u> * 비교지수 =(KOSPI200 X 90%) + (CD금리 X 10%)
2. 투자전략	⑥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주식형 펀드로서, 거시적인 경제전망에 따라 주식 및 채권의 중·장기적인 자산배분을 결정하며, 채권등의 투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90%이상을 모투자신탁인 <u>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u>

자에 의한 이자소득 외에 중·장기적인 주식투자를 통하여 추가 자본 수익을 추구하며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⑦ 주식 모델 포트폴리오는 업종대표주/우량주/가치주 등으로 구성하며 구성종목에 대한 탄력적인 편입비관리를 통한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⑧ 배당시즌에는 고배당수익률이 가능한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되 주가 상승으로 배당수익률 하락 예상시에는 매도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주가변동폭이 미미할 경우 배당투자를 지속적으로 투자합니다.

⑨ 채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 이내에서 금리전망에 따라 듀레이션을 고려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주력하며,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및 CD금리선물을 이용하여 자산가격하락 위험에 대처합니다

⑩ 어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 이하로 투자합니다.

* 비교지수 =(KOSPI200 X 90%) + (CD금리 X 10%)

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및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의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통한 수익을 얻는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 비교지수 =(KOSPI200 X 90%) + (CD금리X 10%)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모투자신탁명칭: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주식형 펀드로서, 거시적인 경제전망에 따라 주식 및 채권의 중·장기적인 자산배분을 결정하며, 채권등의 투자에 의한 이자소득 외에 중·장기적인 주식투자를 통하여 추가 자본 수익을 추구하며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 주식 모델 포트폴리오는 업종대표주/우량주/가치주 등으로 구성하며 구성종목에 대한 탄력적인 편입비관리를 통한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배당시즌에는 고배당수익률이 가능한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되 주가 상승으로 배당수익률 하락 예상시에는 매도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주가변동폭이 미미할 경우 배당투자를 지속적으로 투자합니다.

- 채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 이내에서 금리전망에 따라 듀레이션을 고려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주력하며,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p>국채선물옵션 및 CD금리선물을 이용하여 자산가격하락 위험에 대처합니다</p> <p>* 비교지수 =(KOSPI200 X 90%) + (CD 금리 X 10%)</p> <p><u>* 모투자신탁명칭: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u></p> <p>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우량주식, 가치주식 및 고배당 주식을 중심으로 장기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치의 차별적 반영과 주가의 차별화된 상승을 반영, 업종 대표주에 투자 - 기업가치와 더불어 성장성, 수익성이 업종평균/시장평균 이상인 기업 - 고배당기업 및 현금창출능력이 우량하여 주주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기업 - 지배구조가 우량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기업 <p>BM : (KOSPI200 X 90%) +(CD금리X 10%)</p>
3.운용전문인력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p><u>이 투자신탁은 주식에의 투자에 있어서 신탁재산 60%이상을 우량주식, 가치주식, 고배당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성장형 주식투자신탁입니다.</u>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5.03%이며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u>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및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u>인 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증권(주식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5.03%이며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p>

	<p>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u>증권투자신탁 제1호</u>[주식]은 자산의 대부분을 업종별로 우량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식과 고배당 주식을 선별·집중 투자하여 동 주식시장의 상승에 상승하는 투자수익을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p>	<p>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u>증권투자신탁 제1호</u>[주식]은 자산의 대부분을 업종별로 우량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식과 고배당 주식을 선별·집중 투자하여 동 주식시장의 상승에 상승하는 투자수익을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p>
--	--	---